Ⅱ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1-1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4.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3.5월부터 ’24.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❷ ’23.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4.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3.10월부터 ’24.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❸ ’24.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4.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4.2월부터 ’24.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❹ ’24.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4.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4.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24.9월말 피보험자 수가 기준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명단 제출, 지원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음**(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도 변동 가능)

  *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는 날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반영하지 않음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❶ '23.3월부터 '24.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4.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3.3월부터 '24.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4.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4.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4.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1-2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1]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1]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❷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3]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❹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4.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4.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❺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4]

* [별첨4]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❻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21.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5]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 고용위기지역 현황은 [별첨6]

*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업' 단위로 판단할 때 독립성이 인정된 지사·지점 등이 고용위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청년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

❽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은 [별첨7]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1-3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4.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3.5월부터 '24.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4.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3.1월부터 '23.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4.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4.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4.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1-4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주 3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4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고려하여 1년간 지급되는 임금수준

- 연 매출액은 2022년, 2023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사업개시일이 '23.4.1.이어서 증빙하는 과세 대상기간이 '23.4.1.~'23.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 산정

** 기업은 2022년, 2023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2년, 2023년 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보지 않음

예시

❶ '21.10.1. 설립하고 '22.1.1.~'22.12.31. 동안의 매출액은 7,200만원('23.1.20. 과세 확정신고), '23.1.1.~'23.12.31. 동안의 매출액은 1억 3,400만원인 기업('24.1.10. 과세 확정신고)이, '24.3.1.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3.3.1.~'24.2.29. 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2년, '23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택일하여 제출 가능하므로, '23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800만원을 곱한 값**(=9,0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2.5.1. 설립하고 '22.5.1.~.'22.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3.1.25. 과세 확정신고), '23.1.1.~'23.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4.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3.1.1~'23.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3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2년 매출액 활용

* '22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2.5.1.~'22.12.31.까지의 일수) × 365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800만원을 곱한 값**(=5,4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1-5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합리적인 경우 판단기준

√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①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 · 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 · 노무 · 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1-6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4.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예시

❶ '24.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4.12.24.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4.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5.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4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4.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4.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4.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5.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4년 사업으로 지원 불가

* '25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5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2 지원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❷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8]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❶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❸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❺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❻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2-6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2-7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❸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❹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9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2-10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2-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Ⅲ 지원 요건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1, 1-2, 1-3(❶~⓾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p.20~21)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근로기준법」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4.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4.6.23.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 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유형 무관) 수료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이력 및 청년일경험 참여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취업' 판단시 제외)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확인 방법(예시)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

* 2023년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 **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1-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취업희망풀」 상의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2 지원제외 청년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2-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채용일로부터 24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3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은 월 최대 3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나머지 23개월에 대해서도 지원 불가)

*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금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2-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이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취업애로청년 요건❷와 ❿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p.22.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 참조)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2-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II-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2-6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간접고용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재직자 단계: 사업장에 먼저 취업한 이후, 근로자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자
재학생 단계: 학교에 먼저 입학한 이후, 학생의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자

구분	사업명	비고
재직자 단계	학위연계형, P-Tech	정규직 신분
재학생 단계	도제학교, 전문대단계형, IPP	계약직 신분 (1년이상)

□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경우, **채용일을 기준**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됨

*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요건 적용 가능

○ 이 때, 비록 학위를 받기 위해 수학 중이더라도 사업지침(p.20~21)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에 해당**

□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경우,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해당기간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신분을 갖게됨**

○ 따라서, 사업참여 이전 3개월 이내 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규정상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단,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의 경우 재학생 신분임에도 정규직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 여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개요) 특정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 학업 후, 2학년부터 일·학업 병행

□ 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계약학과 사업의 경우에도, **재직자와 재학생 신분의 시기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

3 채용 요건

3-1 '24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4.1.1.~'24.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24.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도약장려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 또는 시용과 관계없이 도약장려금 지급 →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 '24.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4.1.1.~'24.12.31. 내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5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24년 사업의 지원대상임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과는 달리 봄**

* 자세한 내용은 p.2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 지원관련 안내>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 지원 관련 안내

□ **국취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은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국취 참여자가 일경험(인턴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일반적 의미의 취업과는 달리 봄**

<기존> 국취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일반적인 의미의 '취업'**으로 보았음

<변경>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 '취업'과 달리 봄**

* 국취 일경험(인턴형)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인 점, 일경험 참여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

□ **국취 일경험**(인턴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국취 일경험**(인턴형)**을 제외한 첫 취업을 "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으로 판단

* 이는 "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 요건"에 대한 해석을 변경('22.3.16. 이후 적용)한 것으로 다른 기업 및 청년 (결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함

○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일이 '22.12.31. 이전이어도, **정규직 전환·채용일이 '23년**인 경우 '23년 사업으로 지원 가능함

*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간제 계약에 따른 최초 채용일도 '23.1.1. 이후여야 '23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다만 국취 일경험(인턴형)에 참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취득하더라도 일반 기간제 근로와는 다르게 보므로, 일경험(인턴형) 참여로 인한 최초 채용일이 반드시 '23.1.1. 이후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자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처럼 **'채용 후 3개월 내 정규직 전환' 요건**(사업지침 p.23)은 **적용되지 않음**

*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 후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되더라도 지원 가능

○ **동일·관련 사업주**에 의한 **(재)고용 판단**시에도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예) 국취 일경험(인턴형)으로 A기업에 '23.2.4. 참여하며 5.1. 중도탈락한 甲이 '23.7.1. A기업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동일 사업주에 의한 재고용으로 보지 않음

3-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4.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이 경우, 참여신청서(서식1) 제출 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4-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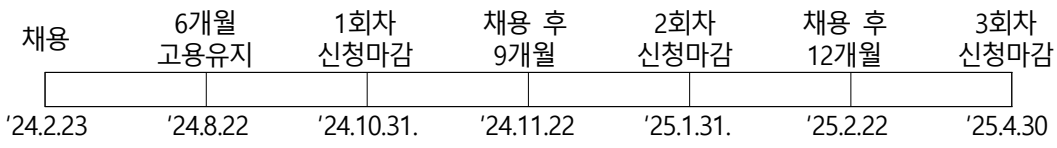

○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4-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예시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4.2.10. 채용, 乙을 '24.6.4. 채용하였고, '24.10.1. A기업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 甲의 경우 '24.2.10~'24.9.30.까지의 지원금은 지급 인정(총 7개월 20일이므로 7개월분 지원금 지급), 乙은 지원금 전액 부지급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고용조정 제한기간(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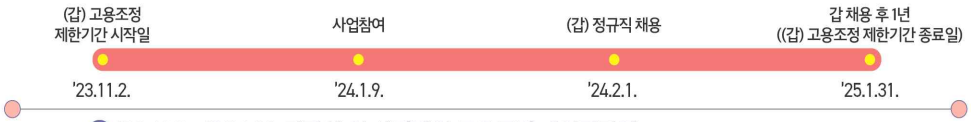

➡ '23.11.2.~'25.1.31. 기간이 이 사업장의 고용조정 제한기간임

2

➡ '23.11.2.~'25.4.30. 기간이 이 사업장의 고용조정 제한기간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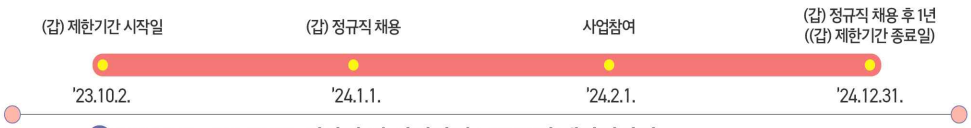

➡ '23.10.2.~'24.12.31. 기간이 이 사업장의 고용조정 제한기간임

4

➡ '23.10.2.~'25.3.31. 기간이 이 사업장의 고용조정 제한기간임

5

➡ '23.11.2.~'24.9.30. 기간이 이 사업장의 고용조정 제한기간임

6

➡ '23.11.2.~'25.5.31. 기간이 이 사업장의 고용조정 제한기간임

7

➡ '23.11.2.~'25.8.31. 기간이 이 사업장의 고용조정 제한기간임

8

➡ '23.11.2.~'24.7.31., '24.9.2.~'25.11.30. 기간이 이 사업장의 고용조정 제한기간임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

○ 채용일은 **'24.1.1.~'24.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5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참고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수도권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 수도권 기업)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에 따른 지원 한도 예시

❶ 서울시(수도권)에 소재한, '23.1월부터 '23.12월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가 12.6명인 기업이 '24.1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 12.6(소숫점 이하 올림) ≒ 13명 → 13×50%=6.5(소숫점 이하 올림) ≒ 지원한도 7명

❷ '24.1월에 충청북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4.5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4.1월~'24.4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4.2명인 경우

☞ 34.2(소숫점 이하 올림) ≒ 35명 → 35×100%=35

❸ '23.7월에 전라남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4.4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3.7월~'24.3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2명인 경우(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

☞ 3.2명(소숫점 이하 올림) ≒ 4명 → 4×100%=4 → 지원 한도 4명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 한도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2-3 지원한도 확대

○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분야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3-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V 지원 절차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1-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2 적격 심사 및 안내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1-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모두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작성하되,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은 기업이 이 지침 및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및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2 청년 채용

2-1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2-2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7),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원」(필요 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 시), 「병적증명서」(필요 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주의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3-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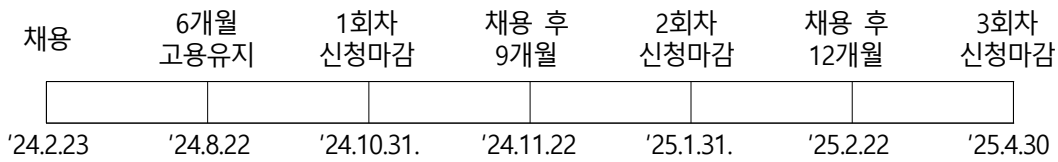

○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2 지원금 심사

〈 1~3회차 지원금의 경우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6)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7)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2년 근속시 지급하는 장기고용인센티브의 경우 〉

○ (지급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직접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2년 근속 여부 등 인센티브 지급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 또는 장기고용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3-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0, 2-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부분 참조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2 지도·점검

1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4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아래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우선 점검대상 포함 사업장

√ 사업 참여신청 반려(불승인) 후 재신청한 기업, 소재지 이전 사업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재택근무 사업장, 부정청구 의심 사업장 등

- 점검대상 중 현장점검과 자율점검은 각 1/2의 비율로 실시하되, '23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1/3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점검대상) '24.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연도별로 상반기에는 3.31.까지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하반기에는 9.30.까지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2 고용센터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 중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함

- 고용센터별 점검 규모 및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별도로 송부하는「도약장려금사업 부정청구 집중점검 계획」따름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 점검을 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3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3 참여기업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사업 지침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